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술인복지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에 한국 관련 해외오류 시정을 위한 전담인력 등 3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 학예연구사 1명, 교사 1명)을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라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관과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제작과의 평가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6.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인 국립국악원의 퇴직 관리운영직군 정원을 행정직군 등으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를 활용한 인력 증원, 직급 상향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단서 중 “8명”을 “9명”으로, “1명”을 “2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670”을 “671”로 하고, 일반직 계 “663”을 “664”로 하며,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66”을 “167”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678”을 “680”으로 하고, 일반직 계 “671”을 “673”으로 하며,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76”을 “180”으로 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임업주사·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72”를 “174”로 하며, 행정주사보·통계주사보·공업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사서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87”을 “83”으로 한다.

별표 2의3 중 총계 “86”을 “87”로 하고, 특정직 계 “75”를 “76”으로 하며, 교사 “72”를 “73”으로 한다.

별표 6 중 총 계 및 일반직 계 “57”을 각각 “58”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

(순방행사취재 담당) 2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외신오류대응 담당) 1”를 신설한다.

별표 6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57”을 각각 “58”로 하고, 전문경력관 나군(순방행사취재 담당) 2 다음에 “전문경력관 나군(외신오류대응 담당) 1”를 신설한다.

별표 7 중 방송무대주사보 “15”를 “16”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10”을 “11”로 하며, “전기운영주사보 1”를 삭제하고, 사무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방송무대주사보 “14”를 “15”로 하고, 행정서기보 “10”을 “11”로 하며, “전기운영주사보 1”를 삭제하고, 사무운영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8 중 총 계 및 일반직 계 “96”을 각각 “97”로 하고, 학예연구사 “36”을 “37”로 한다.

별표 14 1)을 삭제하고, 같은 표 2)를 1)로 하며, 같은 표 2)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6월 30일”을 “2023년 6월 30일”로 하고, 같은 표 3)을 삭제하며, 같은 표 4)부터 6)까지를 각각 2)부터 4)까지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명”을 “1명”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4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8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된 인원을 제외한 정원 중 7명(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4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1의2 행정주사 3명, 행정주사보 4명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은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평가대상 조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별표14의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는 2021년 8월 31일까지는 평가대상에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7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1의2의 정원 중 <u>8명</u> (행정사무관 2명, 행정주사 <u>1명</u> , 행정주사보 5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46조(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10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1의2의 행정사무관 <u>2명</u> , 행정주사 1명 및 행정주사보 3명은 각각 2021년 12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 ----- ---- <u>1명</u> ----- -----

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4호 문화 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44호 문화 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간) ①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 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u>20</u> <u>21년 12월 31일</u>까지 존속한다. ② · 제3조 (생 략)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 구의 존속기간) ① ----- ----- ----- ----- <u>20</u> <u>23년 12월 31일</u>-----. ② · 제3조 (현행과 같음)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u>670</u>	• <u>671</u>	+1
일반직 계	• <u>663</u>	• <u>664</u>	+1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사서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 <u>166</u>	• <u>167</u>	+1
•	•	•	
•	•	•	

[별표 1의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4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678	680	+2
일반직 계	671	673	+2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사서사무 관 · 방재안전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76	180	+4
행정주사 · 사서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 사 · 임업주사 · 방송통신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72	174	+2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3]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3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86</u>		<u>87</u>	+1	
특정직 계			<u>75</u>		<u>76</u>	+1	
	.		.		.		
	.		.		.		
교사			<u>72</u>		<u>73</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8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57</u>	<u>58</u>	+1
일반직 계	<u>57</u>	<u>58</u>	+1
·	·	·	
·	·	·	
전문경력관	<u><신 설></u>	<u>1</u>	+1
<u>나균(외신오류대응 담당)</u>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의2]

해외문화홍보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8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57</u>	• <u>58</u>	+1
일반직 계	<u>57</u>	<u>58</u>	+1
•	•	•	
•	•	•	
<u>전문경력관</u>	<u><신 설></u>	<u>1</u>	+1
<u>나군(외신오류대응 담당)</u>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본문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방송무대주사보	<u>15</u>	<u>16</u>	+1
·	·	·	
·	·	·	
행정서기보	<u>10</u>	<u>11</u>	+1
·	·	·	
·	·	·	
<u>전기운영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사무운영서기보	<u>4</u>	<u>3</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의2]

국립국악원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9항 단서 및 제47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방송무대주사보	<u>14</u>	<u>15</u>	+1
·	·	·	
·	·	·	
행정서기보	<u>10</u>	<u>11</u>	+1
·	·	·	
·	·	·	
<u>전기운영주사보</u>	<u>1</u>	<u><삭 제></u>	-1
·	·	·	
사무운영서기보	<u>4</u>	<u>3</u>	-1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국립민속박물관 공무원 정원표(제47조제10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96</u>	• <u>97</u>	+1
일반직 계	<u>96</u>	<u>97</u>	+1
•	•	•	
•	•	•	
학예연구사	<u>36</u>	<u>37</u>	+1
•	•	•	
•	•	•	